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검토 보고서**

2009. 07. 06

**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신승관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검토 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마포구청장
- 나. 제 출 일 : 2009. 06. 12
- 다. 위원회회부 : 2009. 06. 16
- 라. 위원회 회부근거 :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

2. 제정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등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,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단장, 부단장 및 동 방재단의 구성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3조)
- 나. 방재단장 등 임원의 임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4조)
- 다. 방재단원의 해임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5조)
- 라.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6조)
- 마. 방재단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7조)
- 바. 방재단 운영과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9조)
- 사. 방재단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0조)
- 바. 방재단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
 -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
 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0조, 제62조, 제65조
- 나. 예산조치 : 2010년도 예산에 편성
- 다. 기타
 - 1) 제정문안 : 불임
 - 2) 입법예고 : 입법예고(2009.05.15 ~ 06.03) 결과, 의견제출 없음.

5. 검토결과

○ 제출경위

본 제정 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등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,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임.

○ 구성 및 주요내용으로는

본 제정 조례안은 입법형식상 총 1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 되었으며

- 안 제3조에는 방재단은 단장 1인, 부단장 1인, 간사 1인과 단원으로 구성도록 하고, 단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고,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단체·기업체·기관·학교·종교단체·동호회 등으로 참가자격을 규정하였고,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는 단장, 부단장, 간사, 동 대표의 임무와 이들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는 방재단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는 방재단의 활동방향의 검토·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·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, 동 협의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는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서 활동하며,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방재단의 활동범위와 임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9조에는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,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, 구청장은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여 구 예산에 반영·지원할 수 있도록, 방재단에 대한 운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10조에는 방재단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12조에는 방재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고, 단장은 교육 시간중 연 1회 4시간 이상의 전문기관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,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조례안 검토사항

본 제정 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등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,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“지역자율방재단 추진지침 및 표준 조례안”이 2007년 3월 6일 시달되었고,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강화방안”이 2008년 2월 13일,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“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강화방안 마련 촉구” 공문이 2009년 3월 12일 각각 시달 됨에 따라 우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후 방재단이 원만하게 구성되고,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방재단 구성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며,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※ 관계법령

자연재해대책법

- 제66조 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관련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·대응·복구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

- 제60조 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)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시·군·구 단위로 구성·운영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·면·동 단위로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.
- ③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(이하 "지역자율방재단장"이라 한다)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
-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- 제62조 (교육 및 훈련 등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③그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·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- 제65조 (예산지원)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